

# 2022년도 제1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회의록

## I. 회의 개요

- 일 시: 2022. 1. 4.(화요일), 10:30
- 장 소: 한국저작권보호원 회의실
- 참 석 자: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제2분과위원회 위원 5명 참석
  - 심의위원: 권현영(분과위원장), 김민아, 박정인, 임형주, 홍지만 위원
- 회의 진행순서 및 안건

1. 개회선언 및 인사말씀 ..... 분과위원장

2. 안건상정 ..... 분과위원장

〈의결안건〉 ※ 안건 검토 보고: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오진해 전문위원

- 제1호 :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 중단

시정권고 심의

- 제2호 : 구글 검색결과 제한 심의

3. 폐회선언 ..... 분과위원장

## II. 회의내용 및 결과

### 1. 의결안건

- 제1호: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 중단 시정권고 심의
  - 주요내용: 온라인상의 불법복제물등에 대한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 879건(안전번호 제2022-1호~879호)
  - 회의결과: 안전번호 제2022-1호는 ▶▶▶▶ 블로그에서 신문 1면 헤드라인을 전송함과 동시에 불법복제물을 이용할 수 있는 비공개 SNS 직접링크를 게시한 사안으로, 불법복제물을 직접 복제·전송하고 있는 점, 불법복제물의 이용을 용이하게 하는 저작권 침해 정보를 함께 게시하여 지속적으로 영리를 취하고 있는 점 등이 인정되므로 시정권고의 필요성 및 타당성이 인정되어 가결함.

안전번호 제2022-2호는 ♥♥♥ 블로그에서 영상저작물의 일부를 전송 중인 사안으로, 비록 원저작물의 일부만을 이용하였으나 이를 통해 불법복제물 전체의 이용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있는 점, 저작권법 제104조의6을 위반한 '도촬' 영상으로 형사처벌 대상인 점 등을 고려하면 시정권고의 필요성 및 타당성이 인정되어 가결함.

안전번호 제2022-3호~17호는 ●●●●●●에 불법복제물로 연결되는 링크를 게시한 사안으로, 심의대상 게시물들은 링크를 통해 불법복제물을 제공하여 저작권 침해행위를 방조하는 '저작권 침해 정보'로 시정권고의 대상성이 인정되는 점, 현재 합법 시장에서 제공 중인 저작물을 전송하는 경로를 게시 중인바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시정권고의 필요성 또는 타당성이 인정되어 가결함.

안전번호 제2022-18호~58호는 웹하드 및 ♥♥♥ 블로그에서 불법복제물을 게시한 사안으로, 해당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고 보

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모두 시정권고의 필요성 또는 타당성이 인정되어 가결함.

그 외에 불법복제물등에 해당하는 심의안건 게시물 1,956건은 삭제 또는 전송 중단의 시정을 권고하고 복제·전송자에 대하여는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되,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으로 가결함.

○ 제2호: 구글 검색결과 제한 심의

- 주요내용: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이미 접속차단의 시정요구를 한 해외 저작권침해 사이트 5개의 대체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는 URL 정보 총 664개의 URL 정보에 관한 '구글' 검색결과 제한 협조 요청 여부 (안건번호 제2022-1호~664호)
- 회의결과: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접속차단 조치한 해외 저작권침해 사이트의 대체사이트 5개, 총 664개의 URL 정보에 관해 검색제한 조치를 요청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가결함.

### Ⅲ. 회의 의사록

#### 1. 개회선언

- 권현영 분과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2년 제1회 저작권보호심의 분과위원회 개회를 선언함.

#### 2. 안건상정

- 제1호 :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 중단 시정권고 심의
  - 오진해 전문위원: (심의안건의 저작물명, 저작권자 등 목록을 제시하면서)심의위원님들께서는 PC에 접속하여 금일 심의안건의 저작물명, 저작권자, 온라인서비스제공자 등을 직접 확인해 주시기 바람. 금일 심의대상의 주요 권리자는 '◆◆◆◆◆', '◁◁◁◁◁◁◁◁', '□□□□', '☼☼☼', '○○○○○○○○', '■■■■■' 등임. 저작권법 시행령 제67조의4 및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규정 제11조의 제척 사유 해당 여부를 밝혀 주시기 바람.
  - 참석 위원 전원: 해당 없음.
  - 권현영 분과위원장: 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람.
  - 오진해 전문위원: 금일 심의안건은 40개 온라인서비스 이용자들이 게시한 2228건의 복제물에 대한 시정권고 심의임. 관련 법령과 심의 기준은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겠음.

- 오진해 전문위원: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안건번호 제2022-1호는 민원인이 신고한 사안으로 블로그에서 신문지면 1면을 복제·전송함과 동시에 기사의 불법복제물을 전송하는 SNS 링크를 제공중인 사안임.

(보호원이 제출한 채증 자료 중 게시 화면을 보여주면서)위원님들께서는 각자 PC로 접속하여 심의시스템에 등록된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C 위원: 언론출판사의 저작권접권과 관련하여, 2019년에 유럽 연합에서 관련 지침을 통과시켰음(Directive on Copyright in the Digital Single Market). 독일과 스페인은 관련법을 시행하고 있고 프랑스 또한 입법을 마친 상태로, 뉴스에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는 인식은 이제 거의 일반화 되어가는 수준으로 볼 수 있음. 국내에서도 예를 들어 ♥♥♥♥는 제휴 계약을 통해 ★★★★★, ◎◎◎와 같은 언론사에 연간 8천에서 1억을 지불하고 있음. 제가 언론진흥재단의 여론 집중도 조사위에 있어서 이러한 제휴 계약을 같이 보고 있음. 그런데 이런 블로그에서 월 4만 원에 모든 신문을 받아 보는 서비스를 등록도 없이 영업하고 있는데, 관련부처의 단속이 필요해 보임.

- A 위원: 이 건은 언론진흥재단에서 신고한 것인가?

- 오진해 전문위원: 일반인이 신고한 것임.

- E 위원: 저도 이 건에 대해서는 가결 의견이나, 지금 사이트를 보니

국어교사, 학원 선생님들 그리고 취업스터디 등 목적으로 사설을 공부하자는 취지의 내용이 상당히 많음. 복제·전송이 아닌 링크를 모아 게시하는 수준에 한해서라면 어느 정도 제공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있음. 이 건은 원칙적으로 가결이 맞지만 좀 안타까운 면이 있음.

- C 위원: 언론과 일반 출판이 결이 다른 면은 있음. 심의대상 게시물의 경우 광고를 부착한 것도 시정권고의 고려대상이 될 것임.
- A 위원: 광고도 광고지만 보고된 내용과 같이 뉴스 자체를 가지고 유료서비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작권자들의 비즈니스에 영향을 끼치고 있음. 현실적으로는 이용자측 견해에 고려해야 할 내용이 있지만, 사실 제일 좋은 해결책은 신탁관리기관인 언론진흥재단 등과 제휴를 맺어서 이 블로그와 같은 곳에서도 저렴하게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중재나 조정이 이루어지는 것임. 실제로 대부분은 저작권자들의 비즈니스를 훼손하기 위해 서비스를 하는 것이 아니라, E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는 분야일 수도 있음.
- C 위원: 그래서 권리자 단체가 단일 요금 사용료를 승인받지 않음. 저작물 이용료를 원칙대로 지급하고자 하면 배보다 배꼽이 클 수 있음. 신문 사설 분량이라도 모두 허락을 받아야 함.
- A 위원: 신문 아카이빙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음.
- C 위원: 신문사의 직접링크만 게시하고 이런 서비스는 하지 않았으면 함.

- A 위원: C 위원님 말씀대로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되며, 합법적인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계도하는 취지를 시정권고서에 함께 표기할 수 있으면 좋겠음.
  - 권헌영 분과위원장: 그러면 제2022-1호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는 것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견을 구함.
  - 김민아, 박정인, 임형주, E 위원 : 동의함. 가결 의견임.
  - 권헌영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안전번호 제2022-1호는 게시물에 대해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는 것에 대해 가결함.
  - 오진해 전문위원: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안전번호 제2022-2호는 민원인이 신고한 사안으로 ♥♥♥ 블로그에 게시된 영상 불법복제물임.
- (보호원이 제출한 채증 자료 중 게시 화면을 보여주면서)위원님들께서는 각자 PC로 접속하여 심의시스템에 등록된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람.
- B 위원: 심의대상 게시물은 해당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고 보기 어려움.
  - C, D, E 위원 : 동의함. 가결 의견임.

- 권헌영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안전번호 제2022-2호는 게시물에 대해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는 것에 대해 가결함.
- 오진해 전문위원: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안전번호 제2022-3호~17호는 민원인이 신고한 사안으로 ●●●●●●●에 영상 불법복제물을 다운받을 수 있는 직접 링크가 암호화를 통해 게시된 사안임.  
(보호원이 제출한 채증 자료 중 게시 화면을 보여주면서)위원님들께서는 각자 PC로 접속하여 심의시스템에 등록된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람.
- D 위원: 심의대상 게시물은 링크를 통해 불법복제물을 제공하여 저작권 침해행위를 방조하는 ‘저작권 침해 정보’이며, 해당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고 보기 어려움.
- B, C, E 위원 : 동의함. 가결 의견임.
- 권헌영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안전번호 제2022-3호~17호는 게시물에 대해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는 것에 대해 가결함.
- 오진해 전문위원: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안전번호 제2022-18호~58호는 민원인들이 신고한 사안으로 웹하드 및 ♥♥♥ 블로그에 게시된 불법 복제물임.



(보호원이 제출한 채증 자료 중 게시 화면을 보여주면서)위원님들께서는 각자 PC로 접속하여 심의시스템에 등록된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E 위원: 심의대상 게시물은 해당 저작물의 잠재적 시장 또는 가치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고 보기 어려움.

- B, C, D 위원 : 동의함. 가결 의견임.

- 권헌영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안전번호 제2022-18호~58호는 게시물에 대해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는 것에 대해 가결함.

- 오진해 전문위원: (불법복제물 제공화면, 파일 다운로드 화면, 불법복제물 재생화면을 제시하면서)안전번호 제2021-59호~879호는 모두 불법 복제한 영상물, 음악, 프로그램, 게임, 만화 등을 웹하드 등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공중의 이용에 제공한 사안임.

(심의안전 목록을 제시하면서)일부 안전을 별도로 설명하겠음. 나머지 안전들은 위원님들께서 각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화 ‘(영화)언포기버블 (2021)’ 관련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안전번호 제2022-250호 ‘(방송)DR. 브레인(2021)’ 는 2021. 11. 24. 공개한 해외 영화로 모바일 웹하드에서 380포인트에 배포중임.

(영화 ‘(영화)스파이더맨: 노 웨이 홈 (2021)’ 관련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안전번호 제2022-260호 ‘(영화)스파이더맨: 노 웨이 홈 (2021)’ 는 2021. 12. 15. 개봉한 해외 영화로 모바일 웹하드에서 380포인트에

배포중임.

(방송 ‘(방송)DR. 브레인(2021)’ 관련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안건번호 제2022-845호 ‘(방송)DR. 브레인(2021)’은 2021. 11. 4. ~ 2022. 12. 10. 방영한 국내 드라마로 모바일 웹하드에서 655포인트에 판매중임. 심의대상 게시물이 해당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면 위 3건을 포함한 1,956건에 대해 시정권고 가결 의견임.

- 권헌영 분과위원장: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심의안건 목록을 확인하시어 안건번호 제2021-59호~879호에 대해 의결해 주시기 바람.
- B, C, D, E 위원: (심의안건 목록과 보호원이 제출한 자료를 확인함) 모두 불법 복제한 저작물을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공중의 이용에 제공한 사안임을 확인하였고 가결하는 것이 타당함. 다만, 그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되어 있는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이 타당함.
- 권헌영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안건번호 제2021-59호~879호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고, 나머지 게시물에 대해서는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경고의 시정권고를 하는 것으로 의결함.

(경고, 삭제 또는 전송 중단 시정권고 심의는 아래와 같이 의결함)

“안전번호 제2022-1호, 제2022-2호, 제2022-3호~17호, 제2022-18호~58호는 가결하고 안전번호 제2022-59호~879호는 불법복제물등의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그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를 하되,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으로 가결함.”

○ 제2호 : 구글 검색결과 제한 심의

제2호 안전에 관한 회의록 10쪽부터 13쪽은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회의공개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비공개로 결정함.

(구글 검색결과 제한 심의는 아래와 같이 의결함)

“만장일치로 안전번호 제2022-1호~664호는 구글 검색결과 제한 요청을 가결함”

4. 폐회 선언

○ 권헌영 분과위원장이 제1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폐회를 선언함.

2022년 제1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회의록이  
상기와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2022. 1. 11.

분과위원장 권헌영

위원 김민아

위원 박정인

위원 임형주

위원 홍지만